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96

발의연월일: 2024. 7. 26.

발 의 자:문진석・김교흥・이정문

강준현 · 김문수 · 이연희

김윤덕 · 양문석 · 이재관

이기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임대인 중 보증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임대인 등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는데, 이들 집중관리 채무자(186명)의 61%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문제가 있음.

이는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임차 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 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.

이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 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.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자에 대하여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며,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, 임차인이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6조제1항제12호의2, 제12호의3 및 제49조제8항·제9항).

법률 제 호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2의2.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12의3. 임차인이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 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49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보증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중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보증금 미반환 민간임대주택의 호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"라 한다)를 별도 관리하고,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⑨ 보증회사는 제8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관련 정보를 「개인정보 보

호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할 수 있고, 그 밖에 정보 공유의범위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6조제1항제12 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6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차인이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)	제6조(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)
①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임대	①
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	
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.	
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	
말소하여야 한다.	<u></u>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2의2.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
	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
	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
	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<u> <신 설></u>	12의3. 임차인이「전세사기피해
	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
	특별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
	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로서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13. ~ 17. (생 략)	13. ~ 1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49조(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)	
① ~ ⑦ (생 략)	① ~ ⑦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⑧ 보증회사는 제1항에 따라

<신 설>

⑧ (생략)

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중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보증금 미반환 민간 임대주택의 호수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 는 임대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"라 한다)를 별도 관리하고,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가 추가적으 로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⑨ 보증회사는 제8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관련 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 2항에 따라 공유할 수 있고, 그밖에 정보 공유의 범위,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⑩ (현행 제8항과 같음)